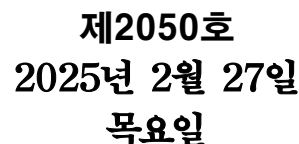


선 람	기관의 장



○ 조	례	제 2139 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2
○ 조	례	제 2140 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 무 과	5
○ 조	례	제 2141 호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감 사 실	10
○ 조	례	제 2142 호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 자 리 정 책 과	18
○ 조	례	제 2143 호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전 총 괄 과	24
○ 조	례	제 2144 호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총 무 과	31
○ 조	례	제 2145 호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평 생 교 육 과	36
○ 조	례	제 2146 호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기 업 지 원 과	40
○ 조	례	제 2147 호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업 지 원 과	45
○ 조	례	제 2148 호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환 경 보 전 과	48
○ 조	례	제 2149 호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환 경 보 전 과	53
○ 조	례	제 2150 호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 원 녹 지 과	56
○ 조	례	제 2151 호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식 품 위 생 과	61
○ 조	례	제 2152 호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접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도 로 과	67
○ 조	례	제 2153 호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 로 과	71
○ 조	례	제 2154 호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	공 동 주 택 과	76

이 관								
--------	--	--	--	--	--	--	--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39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구월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04 (구월동)
구월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08 (구월동)
구월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4 (구월동)
구월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7 (구월동)
간석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31번길 38 (간석동)
간석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 47 (간석동)
간석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동)
간석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7 (간석동)
만수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1 (만수동)
만수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
만수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11 (만수동)
만수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50번길 39 (만수동)
만수5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28번길 3 (만수동)
만수6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7 (만수동)
장수서창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28 (서창동)
서창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43 (서창동)
남촌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32 (남촌동)
논현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15 (논현동)
논현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48 (논현동)
논현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2 (논현동)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함으로써 체계적이며 내실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석1동 청사 소재지 변경 (별표)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40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50이상”을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이상”을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이상으”를 “2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각각 “1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

제31조제4항 중 “65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 전년도에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조정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이내 분납

별표 2 중 4. 보건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4. 보건소

(단위 : m²)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진 료 활 동	a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인용 화장실	4.86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부료 요율 및 감면율 정비
 - 대부료의 요율 기준 명확화(안 제27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대부요율 완화(안 제27조, 안 제31조)
 -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율 상향(안 제31조)
-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사용료 및 대부료의 전년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분에 대한 감액조정 확대(안 제33조)
 -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범위 확대(안 제34조, 안 제62조)
- 장애인 용어 개선(별표 2)

조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41호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

관과 남동구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남동구 공직유관단체(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

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

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피해 직원 등은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기간 및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남동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상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구의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안 제5조~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상담(안 제7조~제8조)
- 피해 직원 등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9조~제10조)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허위신고(안 제11조~제12조)
- 개선권고 및 비밀유지(안 제13조~제14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42호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

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복지·사회·교육·예술·문화 등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복지·사회·교육·예술·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의 남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관련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제6조)
- 정책연구 (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제9조)
- 관련기관 등 협력과 지원·교육·홍보 (안 제10조~제1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43호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폭염 · 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 · 한파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 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그늘목, 쿨링포그, 에어송풍
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6.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
층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
 -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재난도우미”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한 통장 및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한파 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

로 본다.

제5조(폭염·한파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한파 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한파 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한파 쉼터 냉·난방 장비 수선 및 냉·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핫팩 등 냉·난방물품
3. 그 밖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제9조(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 조례에 한파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내용 중 “폭염”에 관한 사항을 “폭염 및 한파”로 정비
- 폭염 및 한파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냉방용품을 냉·난방용품으로 확대 정비(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6조제2호, 안 제7조제2호)
- 재난도우미 운영(안 제8조)
- 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강화(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44호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특성과 남동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
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
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
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논현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 등 생활안전 분야
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의회,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공단소방서(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지역 내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관련 사항(안 제3조, 제5조)
-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45호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남동구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

나. 관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진로상담 등의 학부모 교육

3.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
한다.

4. “정규교과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
과과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
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5조(인재육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
·고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남동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 범위)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
3. 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인재육성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46호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3.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4.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5.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판로촉진 및 판로개척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

때

3.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
업이나 개인·단체 등에는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구매 촉진 등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6조, 안 제7조)
- 장애인기업 우대(안 제8조)
- 포상(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47호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상설매장 외에도 이동형 마켓이나 필요
시 관외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중소기업제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전시판매장 운영을 이동마켓 및 관외지역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동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위치의 확대 (안 제2조제2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48호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남동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
한 공단

라.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
· 출연기관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
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
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 오염, 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공공기관 협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49호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는 생활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 또는 부속 기계·기구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악취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안 제4조)
- 생활악취 실태조사(안 제5조)
- 생활악취 대응 지침(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50호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놀이터의 설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남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무장애 시설 적용 가능성 검토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10. 그 밖에 통합놀이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설치·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통합놀이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리계획 및 안전·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조치, 행위 제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51호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식품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란 모든 식물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
외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생산
· 유통 · 소비 전반에 IT(정보기술) · BT(바이오기술) · AI(인공지능)

· IoT(사물인터넷)·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4.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방안
5.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관·학·연 등과의 협력방안
6. 푸드테크를 통한 대체식품 개발, 스마트농장 운영 등 지역연계 활용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
2. 푸드테크산업의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를 통한 식품위생·음식문화 개선 교육
4. 푸드테크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6.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남동구의회 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

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육성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K-푸드 진흥, 대체식품 개발, 식문화 혁신 등을 도모하고, 식품 및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안전하고 비전 있는 식품 산업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및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52호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

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동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남동구 도로관리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관리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

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53호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
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
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날짜,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

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 또는 작업구 관리자는 제4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구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구청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固着)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도로에 설치된 맨홀 및 기타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작업구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작업구의 긴급정비, 기존 작업구의 이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154호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
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용역의 의뢰) 구청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주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조사 및 용역의 의뢰(안 제4조)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안 제5조)
- 포상(안 제6조)